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4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4. 22) 상정
- 제1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4. 22) 수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배 효 원)

가. 제안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471호, 2009. 3. 5. 공포·2009. 6. 6. 시행)되어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하여 디지털화 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경기도의 정비요청에 따른 정비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의한 “박물관”, “박물관자료”의 뜻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개정 필요를 개선함.(안 제2조제1호·제2호)

- 부천시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에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 운영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여 기능을 대체·보완함.(안 제7조의2 삭제 및 제9조)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침해·차별 규정인 정신이상자 관람거부 및 퇴관명령 규정을 삭제·정비함.(안 제14조)
- 별표 박물관의 위치에 부천펼벽기념관과 부천옹기박물관을 추가 규정함.(안 별표1 및 별표 2)

3. 질의 및 답변요지

- ‘별표 2’ 관람료 중 부천옹기박물관 부분 ‘삭제’ 외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579호
의결 년월일	2010. 4. 26 (제160회)

제안년월일 : 2010. 4. 22.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천용기박물관은 현재 건립 시공 중에 있고 관람료가 책정된바 없음에도 개정안 '별표2' 박물관 관람료 중 부천용기박물관 관람료를 미정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 부천용기박물관 관람료(개인 : 미정, 단체 : 미정) 삭제 수정함.
(안 '별표 2' 박물관 관람료(제11조 관련))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2’ 박물관 관람료(제11조 관련)중 부천용기박물관 관람료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 정 전					수 정 후				
[별표 2] 박물관 관람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별표 2] 박물관 관람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박물관명	구 분	개인	단체	비 고	박물관명	구 분	개인	단체	비 고
	----	---	---	1. ----- 20 명-----.		----	---	---	1. ----- -----.
	----	---	---	2. -----하사 이하 ----- -----		----	---	---	2. ----- ----- -----
	-(65세 이상) ---	---	---	3. 유치원생 미만 -----가족 동반 시 -----단체관람 시 -----		----	---	---	3 ----- -----
	---	---	---	4. 장애인과 그와 동행 하는 보호자 1명 무 료		---	---	---	4.----- ----- -
	-(65세 이상) --	---	---	5.----- ----- -----통합발권 시--		----	---	---	5.----- ----- -----
부천필벽 기념관		무료	무료	----- 50 퍼센트 -----			무료	무료	-----
부천용기 박물관		미정	미정		(삭제)		(삭제)	(삭제)	

위의 수정부분 이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박물관 관람료 (제11조관련) (단위 : 원)					[별표 2] 박물관 관람료 (제11조관련) (단위 : 원)					[별표 2] 박물관 관람료 (제11조관련) (단위 : 원)				
박물관명	구 분	개인	단체	비 고	박물관명	구 분	개인	단체	비 고	박물관명	구 분	개인	단체	비 고
	----	---	---	1. ---- 20명 -----		----	---	---	1. ----		----	---	---	1. ----
	----	---	---	2. -하사 이하 -----		----	---	---	2 -----		----	---	---	2 -----
	----	---	---	- -----		----	---	---	- -----		----	---	---	- -----
	----	---	---	3. 유치원생 미만 -가족 동반 시 -단체관람 시 -----		----	---	---	3.----- -----		----	---	---	3.----- -----
	--(65세 이상) ---	---	---	-----		--(65세 이상) ---	---	---	-----		--(65세 이상) ---	---	---	-----
	---	---	---	4.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무료		---	---	---	4.----- -----		---	---	---	4.----- -----
	---	---	---	5. -통합발권 시 --50퍼센트 -----		---	---	---	5.----- -----		---	---	---	5.----- -----
	--(65세 이상) --	---	---	-----		--(65세 이상) --	---	---	-----		--(65세 이상) --	---	---	-----
(신 설)					부천궐백 기념관		무료	무료						
(신 설)					부천용기 박물관		미정	미정		(삭 제)		(삭 제)	(삭 제)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박물관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3. “기부자”란 박물관 설치를 위하여 박물관자료 등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제2호 중 “전시등에”를 “전시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고, “10년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영합리화등”을 “경영합리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박물관사업 발전을 위하여 부천시박물관운영위원회 협의회”를 “박물관 건립의 사업제안과 유치계획, 박물관의 공간계획 및 환경조성방안, 박물관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의 검토 및 시행에 따른 자문, 그 밖에 발전적 연구 등 박물관사업 발전을 위하여 부천시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박물관장”을 “박물관장·명예관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를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박물관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2호 중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2세이하”를 “12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제7호·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의 제목“(관람거부 또는 퇴관명령)”을“(관람거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전염병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행위제한 또는 퇴관명령)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흡연이나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정신이상자 또는 술에 취한 자”를 “술에 취한 자”로 한다.

“별지”

[별표 1]

박물관의 위치(제3조 관련)

박 물 관 명	위 치	비 고
유럽자기박물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교육박물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부천수석박물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부천활박물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부천필벽기념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6-9번지	
부천옹기박물관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8번지	

[별표 2]

박물관 관람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박물관명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유럽자기 박물관, 부천수석 박물관	어 른	1,500	1,300	1. 단체요금 적용은 20명 이상으로 함 2. 군인은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 대를 포함한다) 3. 유치원생 미만의 아동들은 가족 동반 시 무료. 다만, 단체관람 시 유치원생 단체요금을 적용 4.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무료 5. 관내 다른 박물관 및 문화 시설과 연계한 통합발권 시 입장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있다.
	중·고생 군 인	1,000	700	
	초등학생 유치원생	700	500	
	노인(65세 이상) 장 애 인	무 료	무 료	
교 육 박물관, 부 천 활 박물관	어 른	1,000	800	
	중·고생 군 인	800	500	
	초등학생 유치원생	600	300	
	노인(65세 이상) 장 애 인	무 료	무 료	
부천필벽 기념관		무 료	무 료	
(삭 제)				

[수정안 포함]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박물관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3. “기부자”란 박물관 설치를 위하여 박물관자료 등을 부천시 (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제2호 중 “전시등에”를 “전시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고, “10년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영합리화등”을 “경영합리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박물관사업 발전을 위하여 부천시박물관운영위원회 협의회”를 “박물관 건립의 사업제안과 유치계획, 박물관의 공간계획 및 환경조성방안, 박물관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의 검토 및 시행에 따른 자문, 그 밖에 발전적 연구 등 박물관사업 발전을 위하여 부천시박물관운영위원회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박물관장”을 “박물관장·명예관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를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박물관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2호 중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2세이하”를 “12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제7호·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의 제목 “(관람거부 또는 퇴관명령)”을 “(관람거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전염병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행위제한 또는 퇴관명령)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흡연이나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정신이상자 또는 술에 취한 자”를 “술에 취한 자”로 한다.

“별지”

[별표 1]

박물관의 위치(제3조 관련)

박 물 관 명	위 치	비 고
유럽자기박물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교육박물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부천수석박물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부천활박물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u>부천필벽기념관</u>	<u>부천시 소사구 삼곡본동 566-9번지</u>	
<u>부천옹기박물관</u>	<u>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8번지</u>	

[별표 2]

박물관 관람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박물관명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유립자기 박물관, 부천수석 박물관	어른	1,500	1,300	1. 단체요금 적용은 20명 이상으로 함 2. 군인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3. 유치원생 미만의 아동들은 가족 동반 시 무료. 다만, 단체관람 시 유치원생 단체요금을 적용 4.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무료 5. 관내 다른 박물관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통합발권 시 입장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중·고생 군인	1,000	700	
	초등학생 유치원생	700	500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무 료	무 료	
교육 박물관, 부천 활 박물관	어른	1,000	800	1. 단체요금 적용은 20명 이상으로 함 2. 군인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3. 유치원생 미만의 아동들은 가족 동반 시 무료. 다만, 단체관람 시 유치원생 단체요금을 적용 4.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무료 5. 관내 다른 박물관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통합발권 시 입장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중·고생 군인	800	500	
	초등학생 유치원생	600	300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무 료	무 료	
<u>부천필벽 기념관</u>		<u>무 료</u>	<u>무 료</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설치하는 등록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 ----- -----필요한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p> <p>2.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으로써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박물관을 말한다.</p> <p>2.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박물관자료를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3. "기부자"라 함은 박물관 설치를 위하여 박물관 자료 등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한 자를 말한다.</p>	<p>3. "기부자"란 박물관 설치를 위하여 박물관자료 등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한 자를 말한다.</p>
<p>제4조(기능) (생략)</p> <p>1. (생략)</p> <p>2. 자료의 보존·전시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p> <p>3. (생략)</p> <p>4.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전시 등에</u> -----</p> <p>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p>
<p>제5조(관장) ① (생략)</p> <p>② 관장은 <u>3년이상</u> 박물관장 경력이 있는 자 또는 <u>10년이상</u> 박물관 경력이 있는 학예연구사자격 소지자로서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생략)</p>	<p>제5조(관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3년 이상</u> ----- ----- <u>10년 이상</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명예관장) ①~③ (생략)</p> <p>④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u>범위안에서</u>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명예관장)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범위에서</u> -----</p>

현행	개정안
<p>제7조(해임) (생략)</p> <p>1.~3. (생략)</p> <p>4. <u>기타</u> 목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p> <p>제7조의2(위원회 운영) ① 박물관 건립의 사업제안과 유치계획, 박물관의 공간계획 및 환경조성방안,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의 검토 및 시행에 따른 자문, 기타 발전적 연구를 위하여 <u>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한다.</u></p> <p>④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1. <u>박물관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2. <u>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u></p> <p>3. <u>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u></p> <p>4. <u>지역관계자 등</u></p> <p>⑤ <u>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해 사안의 추진기간 동안 관계전문가를 별도</u></p>	<p>제7조(해임) (현행과 같음)</p> <p>1.~3.(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서 당해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⑤·⑥ (생략)</p> <p>제9조(운영위원 협의회) ① 박물관 사업 발전을 위하여 부천시박물관운영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u>박물관장</u>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u>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u> 시장이 위촉한다.</p> <p>⑤ (생략) <u><신설></u></p> <p>제12조(관람료의 면제)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주민등록증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을 소지한 <u>65세 이상</u>의 노인 	<p>----해당-----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운영위원 협의회) ① 박물관 건립의 사업제안과 유치계획, 박물관의 공간계획 및 환경조성방안, 박물관건립에 필요한 <u>재원확보 방안 등의 검토 및 시행에 따른 자문, 그 밖에 발전적 연구 등 박물관사업 발전을 위하여 부천시박물관운영위원회</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박물관장·명예관장</u>----- ----- --<u>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박물관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u>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2조(관람료의 면제)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 ----- <u>65세 이상</u> ----- -----

현행	개정안
<p>3. 국군의 날에는 군인, 경찰의 날에는 경찰,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만 12세이하의 어린이</p> <p>4. 시장이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와 교육이수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p> <p>5. 국민·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p> <p>6.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p> <p>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3. ----- ----- ----- 12세 이하-----</p> <p>4. ----- ----- -----</p> <p>5. ----- --</p> <p>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p> <p>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p> <p>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14조(관람거부 또는 퇴관명령) (생략)</p> <p>1.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이상자</p> <p>2.~5. (생략)</p> <p>6. 기타 관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p>	<p>제14조(관람거부) (현행과 같음)</p> <p>1. 전염병환자</p> <p>2.~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 -----</p>
<p>제16조(행위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6조(행위제한 또는 퇴관명령)</p> <p>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현행	개정안
<p>1. <u>관장의 허가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u></p> <p>2. <u>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u></p> <p>3. <u>흡연 또는 고성난무하는 행위</u></p> <p>4. <u>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u></p> <p>제18조(자원봉사요원)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0조(준비단 운영) ① (생략)</p> <p>② 박물관 설치준비단에는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1. <u>관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는 행위</u></p> <p>2. <u>관장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u></p> <p>3. <u>흡연이나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u></p> <p>4. <u>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u></p> <p>② <u>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퇴관을 명할 수 있다.</u></p> <p>제18조(자원봉사요원) ----- ----- ----- -----범위에서----- -----.</p> <p>제20조(준비단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따라-----.</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운영의 위탁) ① ----- ----- ----- -----따라----- -----.</p>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 필요한 ----- -----.																																																														
[별표 1] 박물관의 위치	[별표 1] 박물관의 위치																																																														
<table border="1"> <thead> <tr> <th>박물관명</th> <th>위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유럽자기박물관</td> <td>(생략)</td> <td></td> </tr> <tr> <td>교육박물관</td> <td>(생략)</td> <td></td> </tr> <tr> <td>부천수석박물관</td> <td>(생략)</td> <td></td> </tr> <tr> <td>부천활박물관</td> <td>(생략)</td> <td></td> </tr> <tr> <td><신설></td> <td></td> <td></td> </tr> <tr> <td><신설></td> <td></td> <td></td> </tr> </tbody> </table>	박물관명	위치	비고	유럽자기박물관	(생략)		교육박물관	(생략)		부천수석박물관	(생략)		부천활박물관	(생략)		<신설>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박물관명</th> <th>위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부천펄벅기념관</td> <td>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6-9번지</td> <td></td> </tr> <tr> <td>부천옹기박물관</td> <td>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8번지</td> <td></td> </tr> </tbody> </table>	박물관명	위치	비고	-----	-----		-----	-----		-----	-----		부천펄벅기념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6-9번지		부천옹기박물관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8번지																								
박물관명	위치	비고																																																													
유럽자기박물관	(생략)																																																														
교육박물관	(생략)																																																														
부천수석박물관	(생략)																																																														
부천활박물관	(생략)																																																														
<신설>																																																															
<신설>																																																															
박물관명	위치	비고																																																													
-----	-----																																																														
-----	-----																																																														
-----	-----																																																														
부천펄벅기념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6-9번지																																																														
부천옹기박물관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8번지																																																														
[별표 2] 박물관 관람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별표 2] 박물관 관람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박물관명</th> <th>구분</th> <th>개인</th> <th>단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유럽자기 박물관, 부천수석 박물관</td> <td>어른</td> <td>1,500</td> <td>1,300</td> <td rowspan="4">1. 단체요금 적용은 20인 이상으로 함 2. 군인은 하사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3. 유치원생미만의 아동들은 가족 동반시 무료. 다만, 단체관람시 유치원생 단체요금을 적용 4. 관내 다른 박물관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통합발권시 입장료의 50%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td> </tr> <tr> <td>중·고생 군인</td> <td>1,000</td> <td>700</td> </tr> <tr> <td>초등학생 유치원생</td> <td>700</td> <td>500</td> </tr> <tr> <td>노인(65세이상) 장애인</td> <td>무료</td> <td>무료</td> </tr> <tr> <td rowspan="4">교육 박물관, 부천활 박물관</td> <td>어른</td> <td>1,000</td> <td>800</td> <td rowspan="4"></td> </tr> <tr> <td>중·고생 군인</td> <td>800</td> <td>500</td> </tr> <tr> <td>초등학생 유치원생</td> <td>600</td> <td>300</td> </tr> <tr> <td>노인(65세이상) 장애인</td> <td>무료</td> <td>무료</td> </tr> <tr> <td><신설></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박물관명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유럽자기 박물관, 부천수석 박물관	어른	1,500	1,300	1. 단체요금 적용은 20인 이상으로 함 2. 군인은 하사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3. 유치원생미만의 아동들은 가족 동반시 무료. 다만, 단체관람시 유치원생 단체요금을 적용 4. 관내 다른 박물관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통합발권시 입장료의 50%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중·고생 군인	1,000	700	초등학생 유치원생	700	500	노인(65세이상) 장애인	무료	무료	교육 박물관, 부천활 박물관	어른	1,000	800		중·고생 군인	800	500	초등학생 유치원생	600	300	노인(65세이상) 장애인	무료	무료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박물관명</th> <th>구분</th> <th>개인</th> <th>단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td> <td>-----</td> <td>---</td> <td>---</td> <td rowspan="4">1. ----- 20명 ----- -----. 2. -----하사 이하 ----- ----- 3. 유치원생 미만 -----가족 동반 시 -----단체관람 시 ----- ----- 4.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무료 5. ----- -----통합발권 시----- -----50퍼센트----- -----</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부천펄벅기념관</td> <td></td> <td>무료</td> <td>무료</td> <td></td> </tr> </tbody> </table>	박물관명	구분	개인	단체	비고	-----	-----	---	---	1. ----- 20명 ----- -----. 2. -----하사 이하 ----- ----- 3. 유치원생 미만 -----가족 동반 시 -----단체관람 시 ----- ----- 4.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무료 5. ----- -----통합발권 시----- -----50퍼센트----- -----	-----	---	---	-----	---	---	-----	---	---	부천펄벅기념관		무료	무료	
박물관명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유럽자기 박물관, 부천수석 박물관	어른	1,500	1,300	1. 단체요금 적용은 20인 이상으로 함 2. 군인은 하사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3. 유치원생미만의 아동들은 가족 동반시 무료. 다만, 단체관람시 유치원생 단체요금을 적용 4. 관내 다른 박물관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통합발권시 입장료의 50%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중·고생 군인	1,000	700																																																												
	초등학생 유치원생	700	500																																																												
	노인(65세이상) 장애인	무료	무료																																																												
교육 박물관, 부천활 박물관	어른	1,000	800																																																												
	중·고생 군인	800	500																																																												
	초등학생 유치원생	600	300																																																												
	노인(65세이상) 장애인	무료	무료																																																												
<신설>																																																															
박물관명	구분	개인	단체	비고																																																											
-----	-----	---	---	1. ----- 20명 ----- -----. 2. -----하사 이하 ----- ----- 3. 유치원생 미만 -----가족 동반 시 -----단체관람 시 ----- ----- 4.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무료 5. ----- -----통합발권 시----- -----50퍼센트----- -----																																																											
	-----	---	---																																																												
	-----	---	---																																																												
	-----	---	---																																																												
부천펄벅기념관		무료	무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 다. 다만, 관람거절이나 퇴장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염성 질환자 2. <u>정신이상자 또는 술에 취한 자</u>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p>제13조(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u>술에 취한 자</u> 3. ----- --- 4. -----

<관계 법령발췌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 (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